

1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183호 2000. 1. 2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1995년 5월 1일 전에 인가를 받은 조합에 한함)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이들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려는 것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를 “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5년 5월 1일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한한다)이”로 한다.

법률 제5958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0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주택회보